#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2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신장식・이해민・장철민

김재원 • 정춘생 • 박은정

김준형 · 황운하 · 서왕진

김선민 • 박지원 • 차규근

전종덕 · 강경숙 · 이용우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 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 2. 지역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
  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주택을 구입 또는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

     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 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
  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
  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
  정 시 제외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 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평가한 금액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이하 "금융회사등"이라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
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2. 지역가입자가 「한국주택금 용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 저당대출에 가입하여 주택담 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